

#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65호 2023. 2. 24.(금)

##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784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고성군 조례 제278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고성군 조례 제2786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고성군 조례 제2787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0
고성군 조례 제2788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3-26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 34
-------------------------------	----------

화 람									
--------	--	--	--	--	--	--	--	--	--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2월 24일

고성군 조례 제2784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을 “민간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범죄예방활동”을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은”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으로, “민간단체육성·지원”을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육성·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로 하며”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을 “고성군의회 의장, 고성경찰서장,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소방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성경찰서 경무과장”을 “고성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CCTV”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군청”을 “고성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관”을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지원청”을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서”를 “고성소방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범죄예방활동 단체”를 “민간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2월 24일

고성군 조례 제278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이 필요한 고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를 “고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중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이하 “상시출장 공무원 “이라 한다)에” 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 를 “상시출장여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중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 를 “근무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km” 를 “2킬로미터” 로, “경우 제18조1항에 따른” 을 “경우” 로 한다.

제3조의2 중 “별표” 를 “별표 1” 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제2항” 을 “제4항” 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로, “조 제3항” 을 “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배” 를 “5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 (개정)<2023.2.24.>

국내 여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호를 말함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제1호는 특실 실비, 제2호는 일반실 실비를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 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2] (신설)<2023.2.24.>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2월 24일

고성군 조례 제2786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를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조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그 밖에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교육업무 부서장

나. 예산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나.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이하 “고성교육지원청” 이라 한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교육 전문가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 를 “비치해야” 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 를 “첨부해야” 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2조에 따라” 로, “결정하여야” 를 “결정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통지하여야” 를 “통지해야” 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급 학교장” 을 “각급학교장” 으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한다.

제17조 중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를 “않은 사항은” 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2월 24일

고성군조례 제2787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고성군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 3.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총괄부서”란 고성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성군의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 요건) 군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의사 반영,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는 경우

제7조(설치 절차) ① 군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②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칙 등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고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업무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 명단의 공개) 군수는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에 대한 군민의 공개 요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

를·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회의의 고지 및 대리참석금지)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군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다만,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군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통합·폐지)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 3.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군수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②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군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고성군 및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등에 폐지 조례의 준용 규정이 있는 경우 제15조가 준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별 조례나 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차후 개정 시 이 조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1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로 한다.

㉑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로 한다.

㉒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로 한다.

㉓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로 한다.

㉔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로 한다.

㉕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로 한다.

㉖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로 한다.

㉗ 고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로 한다.

㉘ 고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로 한다.

㉙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로 한다.

㉚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로 한다.

㉛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고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로 한다.

④②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③ 고성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④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⑤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⑥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2월 24일

고성군조례 제2788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로 하고”를 “부군수가 되고”로, “부서장”을 “담당 국장”으로,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산관리담당 주사로 한다”를 “공유재산업무 담당이 된다”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전단 중 “취득, 관리” 를 “취득·관리” 로 한다.

제6조의2 중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을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으로, “홈페이지” 를 “누리집(홈페이지)” 으로 한다.

제8조 중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 를 “있어 관리하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로, “집단화함으로써” 를 “집단화하여”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 를 “법 제10조의2” 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의 제목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하고” 를 “않고” 로, “총괄 재산관리관” 을 “총괄재산관리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 을 “기부채납계약서에는 기부한 자” 로 한다.

①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사용·수익허가의”를 “사용허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수익”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조에”를 “제2조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조례 제27조”를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붙여 이 조례”를 “붙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 중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를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5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으로, “대부·매각하거나 대부로 감면 이”를 “대부·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를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재산평정가격”을 “재산 평정가격”으로, “토 석채취”를 “토석 채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평정가격”을 각각 “재산 평정 가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집적 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이”로,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따라 대부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채취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7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5호 중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자치단체”를 “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표] <개정 2023. 2. 24.>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6조관련)

1. 군본청 및 읍면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m<sup>2</sup>)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단독사무실)	부기관장실 (단독사무실)	국장실 (단독사무실)	부서장 (집무면적)	담당및직원 (집무면적)
군 본 청	99	33	33	17	7
읍 청 사	17	-	-	-	7
면 청 사	17	-	-	-	7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m <sup>2</sup> ×사용인원
	4~2.4m <sup>2</sup> /인	2.6~1.5m <sup>2</sup> /인	2~1.2m <sup>2</sup> /인	1.6~1m <sup>2</sup> /인	1.2~0.9m <sup>2</sup> /인	
상황실(군)	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					
서비 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sup>2</sup> / 인	0.40m <sup>2</sup> / 인	0.33m <sup>2</sup>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sup>2</sup> ) × 대수				
식 당	1.63m <sup>2</sup>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m <sup>2</sup> × 공무원 수 × 0.15					
청소근로자휴게실	4명이하: 6m <sup>2</sup> 이상, 5명이상: 1.5m <sup>2</sup> × 근로자 수					확장가능
민 원 실	{(6.55m <sup>2</sup>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sup>2</sup> ~0.2m <sup>2</sup>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sup>2</sup> / 인	11.52m <sup>2</sup> / 인	8.64m <sup>2</sup> / 인			
자 료 실	(0.3~0.4m <sup>2</sup> ) × 공무원수					
창 고	0.72m <sup>2</sup> /인 ~ 0.85m <sup>2</sup> /인					
전 산 실	9.79m <sup>2</sup>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sup>2</sup>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1~7,500	7,501~13,000	13,001~18,000	18,001~23,000	23,001~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sup>2</sup>		800m <sup>2</sup>		1,000m <sup>2</sup>	
	층장비실	6.6m <sup>2</sup>		8.4m <sup>2</sup>		10.2m <sup>2</sup>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1~4,000	4,001~8,000	8,001~12,000	12,001~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1~20,000	20,001~24,000	24,001~28,000	28,001~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 30~40퍼센트]

2. 군의회 청사

(단위: m<sup>2</sup>)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국장실 면적 준용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sup>2</sup>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위원회실	의원 수 × 8.2	
부 속 공 간	c	부서장	17	
		사 무 실	직원 수 × 7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 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 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청소근로자 휴게실	4명이하: 6m <sup>2</sup> 이상, 5명이상: 1.5× 근로자 수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36~77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참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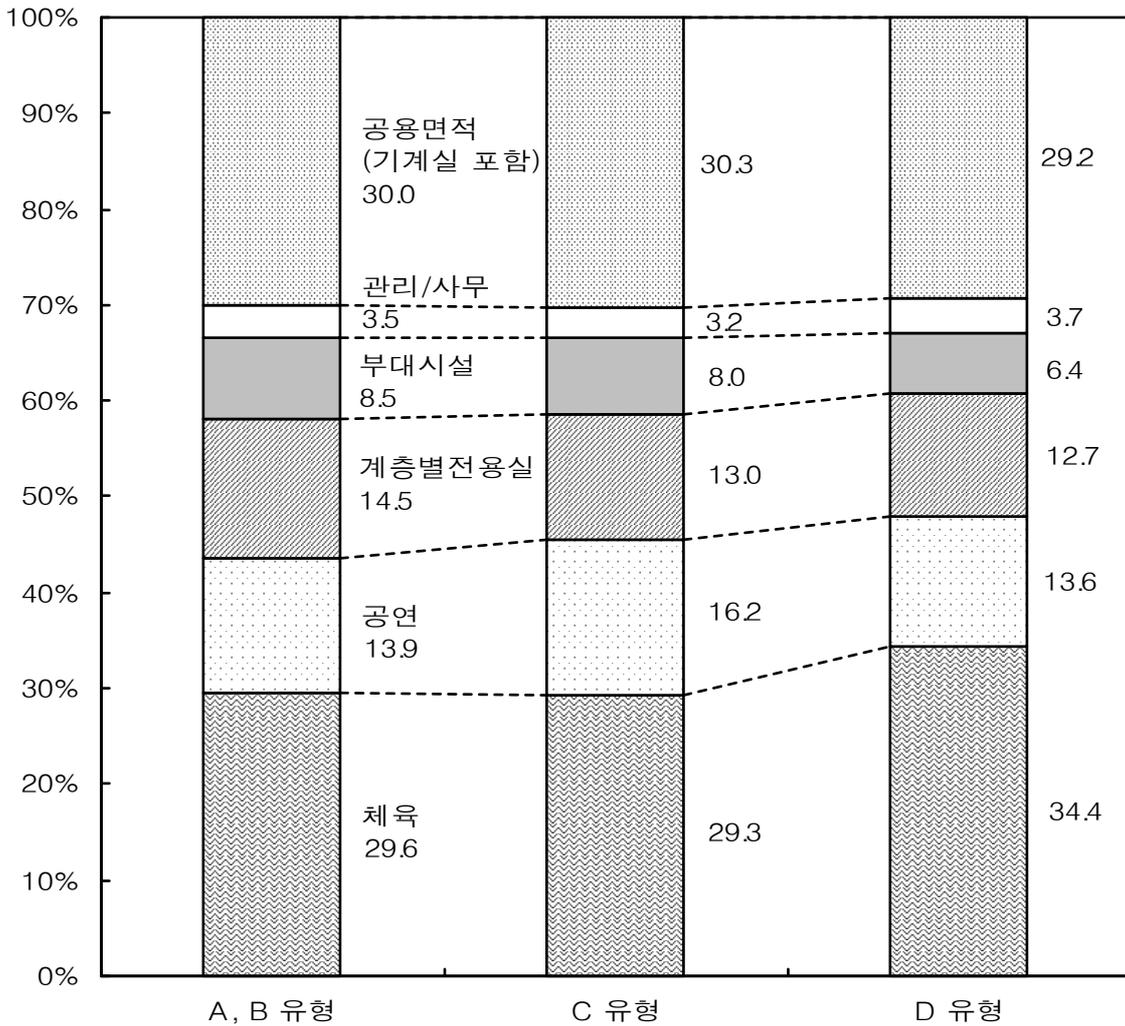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 3. 종합회관

####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B	15-3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li>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C	10-1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li> <li>-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li> </ul>
D	10만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li> <li>-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 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li> </ul>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탈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탈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㉓	343	309	231	148
합 계	계 ㉓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m<sup>2</sup>)

구분	실 명	군보건소 면적기준		
진료 활동	a	접수 / 수납	13.86	비 고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36.00	
		약국조제실	11.88	
		약국창고	11.88	
		일반진찰실	35.64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49.92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	
		다목적실	108	
		창고	52.47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 5. 농업기술센터

(단위: m<sup>2</sup>)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고성군 고시 제2023-26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4.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동해면 외산리 816-2	동해면 외산로 316	2023.02.24.	건물번호부여 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용하여 외산로로 명명	
2	하일면 송천리 410	하일면 자란만로 1525-60	2023.02.24.	건물번호부여 신청	하이면 ~ 삼산면 해안에 걸쳐진 자란만(해안이름)의 이름을 활용하여 부여	
3	하이면 월흥리 1422-6	하이면 공룡로 204-72	2023.02.24.	건물번호부여 신청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